

서울특별시 총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2
------	-----

2019. 9. 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9.2.)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  
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조인동 경제정책실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총무로 영상센터의 주요 업무는 능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상·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

- 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시설형)

- 위 치 :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 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  $m^2$
  - 보유물품 : 181종 602개(소프트웨어 및 리스물품 포함)
  - 보유자료 : DVD 2,574편, 서적 4,375편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편집실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

다. 위탁사무내용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3년(2020.1.1.~2022.12.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14백만원('19년 예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충무로 영상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의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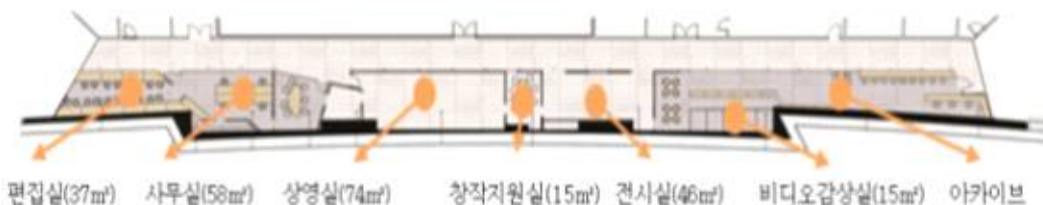
#### 나.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 현황

- 충무로 영상센터(이하 “센터”)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해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개관하였음.

#### <충무로 영상센터 현황>

- 위 치 : 지하철 충무로 역사내 지하1층, 371㎡
- 운영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주요사업 : 자료열람실(서적,DVD), 교육, 편집, 장비대여, 영화상영 및 전시
- 소요예산 : 314백만원(2019년 기준)
- 시설 현황

구분	규모	운영내역
자료 열람실	141㎡	DVD 및 영상자료 관람, 서적 열람, 센터안내 등
상영관	74㎡	영상자료 관람 (28석)
전시실	46㎡	프로, 아마추어 작가 작품 소개 및 전시
편집실	37㎡	영상편집 지원 및 장비 대여
창작지원실, 교육실 등	73㎡	회의(세미나), 장비보관, 사무 공간 등



- 현재 센터는 영상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료열람실과 상영관,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유상으로 교육 프로그램<sup>1)</sup>, 촬영장비 대여 및 편집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독립영화 콘텐츠 제작 촬영장비의 70%를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하고, 독립영화 콘텐츠 보유자에 한해 상영관에서 무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 밖에 미디어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킹과 홈페이지·메일·SNS를 통한 센터의 홍보와 프로그램 안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센터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용수요가 가장 많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어 활용도와 편의성을 저해시키고 있음.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주요 업무인 영상·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1) 교육 프로그램은 영상 문화에 대한 교양 강좌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거나 영화 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시민을 위한 전문 강좌(8개월 과정)로 나누어 운영 중임.

- 하지만 센터의 사업별 공간 사용도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의 주된 업무가 영상·전시물의 관람 제공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 효율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3년간 센터의 운영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열람실	서적	28,237	23,159	22,106
	DVD	6,493	5,344	4,679
교육		421(56회)	579(92회)	509(76회)
영화 상영		1,102(52회,70편)	1,133(60회,106편)	913(63회,99편)
극장 대관		1,574(101회)	1,133(60회,106편)	1,699(82회)
장비 운용		1,720 (101건,233일)	1,125 (104건,225일)	1,695 (117건,295일)
영상편집실 운영		1,071	875	848
전시실 운영		31,308(11회)	38,262(11회)	37,589(10회)
창작지원실 운영		1,022(176회)	728(86회)	115(35회)
미디넷		1,002(8 단체)	360(5단체)	124(2단체)
합 계		73,950명	72,707명	70,277명

- 자료열람실의 경우도 센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실 역시 영상문화와 관련 없는 전시가 더 잦은 편이라는 점에서 센터가 시민에게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양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간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또한, 최근 3년간 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르면, 자료열람실, 교육, 영화상영, 영상편집실 등의 이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창작지원실은 노후화로 인해 장비보관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등 센터의 운영이 침체되고 있음.

-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개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증가 등 영상산업과 영상 창작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센터는 수요가 증가하는 장비 대여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나, 영상 편집과 장비 대여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미디어콘텐츠 센터 등 영상 관련 지원기관과 시설들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지하철역 개찰구의 협소한 통로에 센터가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고 현재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제약이 크므로 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42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의 주요 업무는 능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상·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시설형)
- 위치 :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
    - 보유물품 : 181종 602개(소프트웨어 및 리스물품 포함)
    - 보유자료 : DVD 2,574편, 서적 4,375편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편집실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

다. 위탁사무내용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3년(2020.1.1.~2022.12.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14백만원('19년 예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 이영민 (☎ 2133-5235)